참 고 자 료

‘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Q & A

2024. 2

본 내용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고 주요사항 및 관련정보를 Q&A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. 신청자께서는 반드시 공고 전문을 숙지 하시고, 관련법령 및 지자체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?

○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시설자금, 생산자금,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○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(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포함)입니다.

○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·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·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.

○ 운전자금은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.(단, 중소기업에 한정함)

※ 공공기관*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기관

2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시설자금은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풍력 분야 500억원, 태양광 분야 300억원, 바이오 및 기타 에너지원은 100억원 이내입니다.

○ 생산자금은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이고,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.(바이오 분야는 100억원 이내, 3년거치 5년 분할상환)

○ 운전자금은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억원 이내이며,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.

○ 이자율은 분기별로 변동금리로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○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80%이내, 중견기업 60%이내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대기업 40%이내입니다.

○ 최소 신청액은 3천만원 이상(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)이며,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.

3 공사비 명세서는 무엇인가요?

○ 공사비 명세서는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1조(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) 제1항에 따라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이며, 기술사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즉, 공사비 명세서는 기술사가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라고 할 수 있으며, 구체화된 공사비가 확정되고 공사비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신청 시점도 기존 발전사업 허가·개발행위허가 후에서 공사계획 신고 후로 변경되었습니다.

< 전력기술관리법 >

제2조(정의) 3, "설계"란 전력시설물의 설치·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, 설계도면, 설계설명서, **공사비 명세서**,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[이하 **"설계도서"**라 한다]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1조(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) ① **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**하여야 한다.

4 설비용량이 100kW 정도인 태양광발전소를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추천신청서 하나로 신청해도 되나요?

○ 추천 신청은 발전사업 허가 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공고문에 신청용량의 총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5 BIPV는 무엇인가요?

○ BIPV는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의 약자로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

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로,

ㅇ 창호, 스팬드럴, 커튼월, 이중파사드, 외벽,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, 창, 지붕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의 핵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,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를 말합니다.

ㅇ 금융지원사업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(BIPV) 한국산업표준(KS C 8577)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
6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?

ㅇ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원하며, 2024년 10월 1일 이후 착수된 사업(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)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ㅇ 다만, 사업의 착수를 시공업체와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으로, 공사계획 신고필증상 공사개시(시작) 일자가 시공업체와의 계약일자 이전일 수 없습니다. 이외,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, 해당년도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(예시) 2023년 10월~2024년 9월 사이에 계약 및 설치한 사업이 2024년 공고에 지원하지 못하였다면, 2025년 공고에 지원 불가

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ㅇ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(www.knrec.or.kr)의 “자료실 - 알림/뉴스 - 사업공고”에서 확인 가능하며,

○ 사업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(www.knrec.or.kr)의 “맞춤메뉴 - 신·재생E 전자민원 - 신재생에너지 9. 금융지원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8 담보가 필요한가요?

○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.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,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,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9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6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.(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신한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산은캐피탈)

- 단, 금융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도 공지하겠습니다.

※ 지역 농협, 지역 축협, 지역 수협, 제2금융기관(신용협동조합 등) 제외

10 추천받은 후에 발전소 정보나 대출 금융기관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○ 자금 추천을 받은 후 발전소 시설변경,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○ 시설변경 등에 따른 총 공사비 감소 등 자금 추천액이 하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반드시 자금추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11 대출 후 자금 인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○ 추천서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최초 인출(20% 이상)을 실행하여야 하며, 추천받은 자금은 당해 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- 단,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, 추천서 발급 이후 4개월 이내 최종 인출해야 하므로, 발전소 준공(사용전 검사일정 등 포함), 대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합니다.(금융기관 대출심사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은행의 신청으로 30일 인출기한 연장 가능)

· 기한 내 최종인출 불가할시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됩니다.(별도 안내 없음)

* 예) 신청 건의 추천서 발급일이 4월 1일인 경우, 7월 31일까지 최종 인출 완료하여야 하며, 인출기한 연장 시 최대 8월 31일까지 인출 완료하여야 함

12 최종 자금 인출을 위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자금의 최종 인출을 위해서는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[별지 제54조 서식]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첨부서류 : 설치사진, 전자세금계산서, 태양광 보험 또는 공제증서*

*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,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(제3자 피해 배상)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

○ 자금의 최종 인출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성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, 발전소의 준공 확인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완료 여부 등이 기성 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13 보완요청 없이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?

○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.

- **자금 신청금액**(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)**이 3,000만원 미만인 경우**

- **자금지원 대상 부적격인 경우**

  · 공고문 “지원 제외 대상” 참조, 발전소는 자금 신청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취득한 경우

  * 예) 자금 신청일 ’24년 3월 15일, 신고필증 발급일 ’24년 3월 20일인 경우 반려

  · 단, 100kW 미만 발전소는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(표준시설부담금 청구일자)가 자금신청일 이후인 경우에도 반려

- **자금 추천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**(착오·실수 등 불인정)

  · 계약서, 공사비 명세서, 공사계획 신고필증, 시공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 미첨부

  · 공파일 제출, 타발전소 자료제출 등 해당 신청건과 관계없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시(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제출로 간주)

  · 제출서류에 날짜, 날인(도장,사인 등)이 미기재된 경우

  · 신청서 작성내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

14 [농촌태양광 관련] 농업회사 ‘법인’ 도 지원할 수 있나요?

○ 농업회사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이 불가능합니다. 이외에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 조합은 지원 가능합니다.

15 [농촌태양광 관련] 연접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?

○ 읍·면·동 간의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.

① 연접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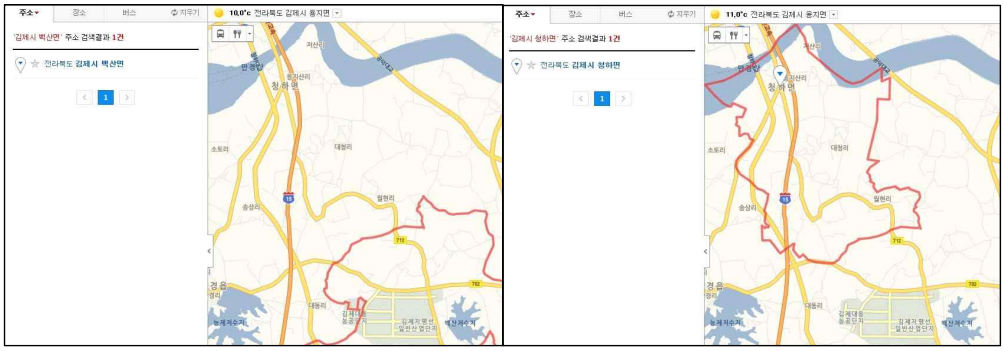

발전소재지(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) 주민등록지(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)

② 연접 불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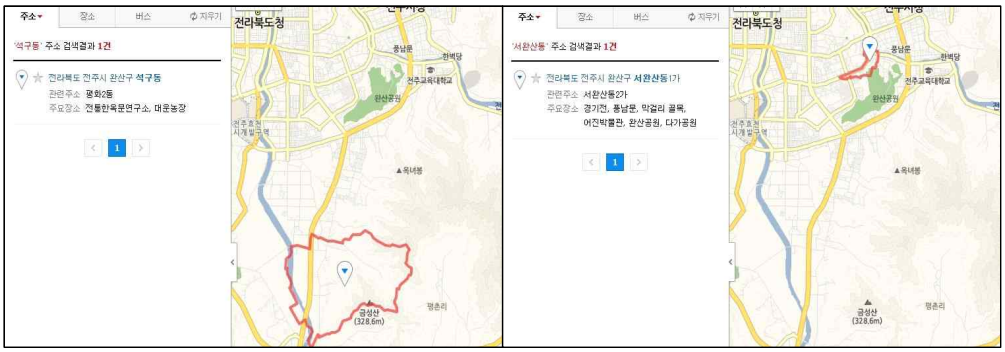

발전소재지(전라북도 전주시 석구동) 주민등록지(전라북도 전주시 서완산동)

16 [농촌태양광 관련]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?

○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,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어업인은 어업인 확인서,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(등록증)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○ 농, 어업, 축산업 자격, 허가, 경영체 등록 정보는 최신 정보로 제출(변경등록 시 최신 변경등록 정보)하여야 하며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

○ 농, 어업, 축산업 자격 여부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발급처

농업인 확인서 :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

어업인 확인서 :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

-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-609-6114
-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-880-6114
-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-650-6000
-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-981-5000
-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-520-6000
-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-441-2223
-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-280-1700
-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-242-1812
-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-683-0313
-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-228-5500
-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-660-7700
- 제주지방해양수산청(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)

축산업허가(등록)증 : 관할 지자체에 문의

축산법 시행령

제14조(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(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17 [농촌태양광 관련]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?

○ 발전사업허가일 당시 지목 기준으로 임야, 전, 답 과수원 지목은 지원이 제외됩니다.

- 예를 들면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지상형(토지 위에 바로 설비 설치)으로 태양광 설치하거나 과수원 지목의 창고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모두 지원이 제외됩니다.

- 단, 우사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할 시 해당 지목 위에 설치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· 우사(소사육)는 축산업 등록(허가)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, 축산업 등록(허가)증을 득한 자가 해당 등록(허가)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

· 우사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며, 농장 사육개체 현황자료 제출

· 우사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, 발전사업자(임차인)는 거주조건을 만족하여야 함

○ 아울러, 축사(우사는 가능)·버섯재배사·곤충재배사 등 동·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지원 제외됩니다.

18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이나 건물에 설치해도 되나요?

○ 가능합니다. 다만,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, 소유주 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단, 세부지원분야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19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발전소를 설치해도 되나요?

○ 중고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0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?

○ 태양광 모듈 설치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(670kgCO2/kW이하)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
- 단, 본 공고일 이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(표준시설부담금 청구서)를 발급받은 설비는 상반기 접수분에 한해 탄소배출량 미검증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.

21 태양광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?

○ 전기공사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여야 하며 시공지역, 시공업체 소재지, 시공업체 자금여력 및 신용현황, 과거 시공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업체를 비교 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.

22 전기시설 부담금 고지서란 무엇인가요?

○ 전기시설 부담금 고지서란 일명, 계통연계비 청구서, 표준시설부담금 청구서라고도 불립니다. 한전에서 계통연계 공사(인입비용)를 위해 청구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전기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, 한전에서 인입공사를 진행한 후 태양광설비 시공을 하게됩니다.

23 공고문의 “이전” 과 “이후” 는 어떻게 해석하나요?

○ 이는 당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예를 들어, “100kW 미만 발전소는 자금신청일 이전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” 이라는 문구가 있고, 자금신청일이 ‘24.5.3일 경우, ‘24.5.3에 발급된 고지서도 해당됩니다.

24 신청서 보완횟수 및 보완일에 대해 알려주세요?

○ 자금신청자는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 3일 이내 미보완시 반려되며, 보완횟수는 2회에 한합니다.

○ 자금 추천액은 자금 추천 검토 및 심사 결과, 지원 불가항목 금액 제외, 자금수요 고려 등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